

광주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72805 판결 [공사대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72805 판결

광주지방법원화순군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소26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

변론 종결 2024. 6. 28.

판결 선고 2024. 7. 26.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소26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97,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4.부터 2023.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27,7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5. 15.경 피고로부터 ① C 대종중 소유의 전남 화순군 D 답 1,61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립공사비용으로 '25.5톤 덤프트럭 1대당 55,000원1)' 및 '신호수 등 부대비용'의 지급을 구두로 약속받고, 같은 달 29.경부터 2021. 6. 23.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복토)공사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② E 소유의 F 1,438m² 및 ③ G 소유의 H 859m²에 대한 매립공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나. 원고의 위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①, ②, ③) 토지 전체에 대한 매립공사를 위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5.5톤 덤프트럭이 483대 들어왔고, 당시 신호수 등 부대비용으로 860만 원이 소요되었는바, 그에 따른 위 3필지 토지 전체의 매립공사대금은 합계 35,165,000원{= 덤프트럭 운반(매립)비용 26,565,000원(= 55,000원 × 483대) + 신호수, 물차 등 부대비용 860만 원, 별지 표 참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위 3필지 토지 전체의 매립공사대금

35,165,000원 중 14,527,799원($= 35,165,000\text{원} \times 1,617\text{m}^2 / 3,914\text{m}^2$)을 구하고 있는바, 위 공사대금은 '덤프트럭 운반비용 1,100만 원($= 1\text{대당 } 55,000\text{원} \times 200\text{대}$)'과 '신호수, 물차 등 부대비용 3,552,938원4)'을 합친 금액이므로, 이를 나누어 보기로 한다.

① 덤프트럭 운반(매립)비용 부분

원고는 덤프트럭 운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투입된 덤프트럭이 총 200대이고, 1대당 55,000원씩임을 그 전제로 삼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는 1대당 1만 원씩 총 159대만 투입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 주장의 위 덤프트럭 운반비용 중 159만 원($= 159\text{대} \times 1\text{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피고가 덤프트럭 운반(매립)비용을 25.5톤 덤프트럭 1대당 55,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매립 공사에만 투입된 총 덤프트럭 댓수(내지는 운행 횟수)를 원고의 주장처럼 위 3필지 토지 전체 면적 중 이 사건 토지면적의 비율에 의거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위 200대를 이 사건 토지에 투입된 실제 덤프트럭 수량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만 투입된 덤프트럭 수량이 총 200대에 달한다거나 피고 인정 수량 159대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159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덤프트럭 운반비용은 8,745,000원($= 55,000\text{원} \times 159\text{대}$)이라고 할 것이다.

② 신호수, 물차 등 부대비용 부분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피고 역시 원고 주장의 위 신호수 등 부대비용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바, 위 부대비용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이 사건 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르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신호수 등 부대비용은 3,552,938원($= 860\text{만 원} \times 1,617\text{m}^2 \div 3,914\text{m}^2$)이 된다.

③ 소결(인정금액) : 12,297,938원($= 8,745,000\text{원} + 3,552,938\text{원}$) (그러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297,9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6.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현

판사이민수

판사김정숙

별지

-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5.5톤 덤프트럭 1대당 1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립공사를 진행한 인접 토지공사대금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 토지 전체 면적 $3,914\text{m}^2$ (= 이 사건 토지 $1,617\text{m}^2$ + F $1,438\text{m}^2$ + H 859m^2)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1,617\text{m}^2$)의 비율임
- 3) 200대(= 총 483대 $\times 1,617\text{m}^2 \div 3,914\text{m}^2$),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 토지 전체에 투입된 덤프트럭 총 483대를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비율로 산정한 운행횟수임.
- 4) 3,552,938원(= 860만 원 $\times 1,617\text{m}^2 \div 3,914\text{m}^2$)